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9 월 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남상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9420호, 2009. 2. 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함. (안 제4조의2, 신설)
- 지방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,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)

○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 록 규정함.(안 제1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별정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이 되지 않고 있었는가?	○ 그러함. 해서 6개월이상 육아 휴직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 정하는 것임. (총무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**요**지 : 없음

7. 기타 **필요한 사항** : 없음

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"를 "부천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공무원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"임용등에"를 "임용 등에"로 하고,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의하여"를 "따라"로 하고, "제2조제3항제2호다목"을 "제2조제3항제2호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급 내지 9급"을 "1급부터 9급"으로 하며, "당해 직위"를 "해당 직위" 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 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6조 중 "18세이상"을 "18세 이상"으로 한다.

제7조 중 "단위기관내"를 "단위기관 내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1월에서 6월사이"를 "1월에서 6월 사이"로 하고, "퇴직된다"를 "퇴직한다"로 한다.

제9조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한다.

제10조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

- 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의하여"를 "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 - 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「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8 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 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1조 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 -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 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3제2항 중 "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1조에 따라"로 하고, "30일이내"를 "30일 이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 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 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 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"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"을 "「지방공무원 징계 및소청 규정」"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452호
의 결	2009. 9. 8.
년월일	(제154회)

제출년월일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9420호, 2009. 2. 6. 공 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함. (안 제4조의2, 신설)
- 나. 지방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,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 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)

다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 록 규정함.(안 제12조)

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"를 "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공무원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2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"를 "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따라"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"임용등에"를 "임용 등에"로 하고,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의하여"를 "따라"로 하고, "제2조제3항제2호다목"을 "제2조제3항제2호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급 내지 9급"을 "1급부터 9급"으로 하며, "당해 직위"를 "해당 직위" 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 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6조 중 "18세이상"을 "18세 이상"으로 한다.

제7조 중 "단위기관내"를 "단위기관 내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1월에서 6월사이"를 "1월에서 6월 사이"로 하고, "퇴직된다"를 "퇴직한다"로 한다.

제9조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한다.

제10조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의하여"를 "따라"로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「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 18조 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 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 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3제2항 중 "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1조에

따라"로 하고, "30일이내"를 "30일 이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 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 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 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"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"을 "「지방공무원 징계 및소청 규정」"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혂 햀 개 정 안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에관한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제1조(목적) -----_「지방공무 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4 조제4항에 따라 -----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. 제2조(적용범위) ① (생략) 제2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임용 등에 -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 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----- 따른다.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 ③ ----- 따라 -----정직공무원은 제2조제3항제2호 -----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 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 제4조(임용자격) ①법 제31조 각호 제4조(임용자격) ① -----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.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급부터 9급 -----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

현 행 개 정 아 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 ----- 해당 직위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. 제6조(신규임용 최저연령) 별정직 제6조(신규임용 최저연령) -----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. ----- 18세 이상----. 제7조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3 제7조(전보) -----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-----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 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 다.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 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. 제8조(근무상한 연령) ① (생 략) 제8조(근무상한 연령) ① (현행과 같음)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

현 행

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<u>1월에서</u>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,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.

- 제9조(당연퇴직) 별정직공무원이 법 31조 <u>각호</u>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- 제10조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 정직공무원이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
 - 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상 당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. 단, 상 당기간이라 함은 부천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 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말한다.
 - 직제,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
 - 3. (생략)
 - 4. <u>기타</u> 임용권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

<u>1</u> 월에서
<u>6월 사이</u>
퇴직한다.
제9조(당연퇴직)
<u>각 호</u>
제10조(직권면직)
<u>각</u> 호의 어느 하
나
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
「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
례」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
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
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
한 지장이 있을 때
2
따라 #라
3. (현행과 같음)
4. <u>그 밖에</u>

혂 햀

제11조(휴직) ①별정직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②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 로 기소된 때(약식명령이 청구 된 자는 제외한다)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휴직기간) 제11조제1항 <삭 제> 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 무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

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(생 략)

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 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

개 정 아

제11조(병역 •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 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 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 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 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 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 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 간으로 한다.
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 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 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 여 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휴직의	효력)	1	(현
행과 같음)			

(2)	제]	[]조	에	Щì	<u> </u>	 	 	

-30일 이내

혂 햀

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 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 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 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 간으로 본다.

제12조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 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 충)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 호의 사유 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 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 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 로 본다

제13조(징계) 별정직공무원의 징 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다.

개 정 안

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 적 평정방법・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 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・임용 등 각종 인 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징계)	
「ス	방공무원 징
계 및 소청 규정」	

현	행	개 정 안
레1Fフ/기체기기)	시 구제 기체	 게1[코/기케그키) 시 코ᅰ 기케시
제15조(시행규정)		
관하여 필요한	사항은 시장역	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
따로 정한다.		한다.

〈관계법령발췌서〉

○ 지방공무원법

- 제2조 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 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 다.
 - 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·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
 - 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 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- 3. 기능직공무원: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
- 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정무직공무원
 -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
 - 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 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- 2. 별정직공무원: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 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- 3. 계약직공무원: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
 - 4. 고용직공무원: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 -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·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- 제25조의2 (외국인의 임용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제41조 (휴직자·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)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,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다만,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- 제63조 (휴직)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 - 1. 신체 ·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
 - 2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
 - 3. 천재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(생사) 또는 소재(소재)가 불명확 하게 되었을 때
 - 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

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

- 5.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
-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- 1. 국제기구·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,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
- 2.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
- 3.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
- 4.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
- 5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·배우자·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
- 6. 외국에서 근무 ·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
-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○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

- 제13조 (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<개정 2001.6.30>)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관하여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.
 - ③별정직공무원인 동장·읍장 및 면장의 징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1.6.27, 1998.2.20>
 - ④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에 의하고,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한다. <신설 2001.6.30>

○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제18조(휴가의 종류)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 제19조(연가일수)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

재직기간	연가일수
3월이상 6월미만	3
6월이상 1년미만	6
1년이상 2년미만	9
2년이상 3년미만	12
3년이상 4년미만	14
4년이상 5년미만	17
5년이상 6년미만	20

6년이상	21

- ② 제1항의 "재직기간"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- 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
- 2.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- 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- ③ 해당 연도에 결근·휴직·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.
- 1.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
- 2.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
- 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. 다만,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 -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 - ⑤ 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 -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에 0.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- 제22조(병가)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 - 2.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함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 -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-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23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 - 1. 「병역법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, 소집,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
 - 2.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, 법원,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
 - 3.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
 - 4.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
 - 5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
 - 6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
 - 7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
 - 8. 천재지변,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 - 9. 올림픽·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
- 제24조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 - ③ 여자공무원은 생리 및 임신한 때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 -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 -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⑥ 풍해·수해·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(「모자보건법」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 - 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6주 이상 21주 이 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- 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- 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- 제25조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